

[별표 1]

소방용품 품목단위 구분(제3조제3항 관련)

1. 품질제품검사의 구분<개정 2026.4.13.>

품질제품검사 구분	검사주기	
	형식승인대상소방용품	성능인증대상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 (Ⅰ)	1월 1회	1월 1회
품질제품검사 (Ⅱ)	3월 1회	6월 1회
품질제품검사 (Ⅲ)	6월 1회	12월 1회

※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상기의 검사주기 기간을 2배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정하는 수수료할인율은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검사주기 확대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품목단위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5.1.15.>

2. 소방용품의 품목단위

가.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개정 2015.1.15., 2026.4.13.>

단위	품 목		
1	소화기구	소화기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4		자동소화장치	가. 가스자동소화장치
5			나. 분말자동소화장치
6			다.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7		자동확산소화기	
8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9		투척용소화용구	
10		소공간용 소화용구	
11	소화약제		
12	방염제		
13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14		구조대	
15		완강기	가. 완강기(간이완강기를 포함한다)
16			나. 완강기지지대
17		유도등	

18		비상조명등	
19	경보기구	누전경보기	
20		가스누설경보기	
21		발신기	
22		수신기	
23		중계기	
24		감지기	가. 열감지기
25			나. 연감지기
26			다. 불꽃감지기
27		경종	
28	자동소화 설비의 기기	유수제어밸브	
29		스프링클러헤드	
3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31		가스관선택밸브	
32	그 밖의 소방용품	소방호스	
33		관창	
34		<삭 제>	
35		공기호흡기	
36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37		소화전	가. 옥내소화전방수구
38			나. 옥외소화전

나.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개정 2021.9.30., 2026.4.13.>

단위	품 목
1	축광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7	소방용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삭 제>
11	공기안전매트

12	소방용밸브	가. 개폐표시형밸브
13		나. 릴리프밸브
14		다. 푸트밸브
15	소방용스트레이너	
16	소방용압력스위치	
17	소방용합성수지배관	
18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9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20	소화설비용 헤드	가. 물분무헤드
21		나. 분말헤드
22		다. 포헤드
23		라. 살수헤드
24	방수구	
25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26	소방용흡수관	

비고 : 규칙 별표 7 제22호에 의하여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품의 품목단위 구분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품
단위로 한다.<개정 2015.1.15., 2021.9.30.>